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53 발의연월일: 2025. 4. 3.

발 의 자: 박성훈·김형동·고동진

안상훈 • 이인선 • 박충권

백종헌 · 김성원 · 조배숙

이상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」결과에 따르면 노숙인 등의 48.4%가 우울증으로 의심 또는 확인되고 있으며,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특히,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사례 관리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·설득으로 의료 개입이 조 기에 이루어질 경우 노숙인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.

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정신건강상담 프로그램 등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,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고용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타 지원서비스와는 달리 심리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숙인 등에게 원활한 사회복

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, 노숙인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3 신설등).

법률 제 호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심리상담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렁으로 정한다.

제1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제12조의3에 따른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신 설> | 제12조의3(심리상담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 |
| 제19조(노숙인종합지원센터) 노숙 |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제19조(노숙인종합지원센터) |
| 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. | |
| 1. ~ 3. (생 략) <u>4. 심리상담</u>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제12조의3에 따른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|
| 5. (생 략) | 5. (현행과 같음) |